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에 국방 분야 인공지능·첨단기술의 개발 및 활용체계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차관보 1명을 신설하여 국방인공지능기획·전력정책·국방정보화 및 군수관리 업무 등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도록 하면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補)하도록 하고, 국민의 군대를 위한 제도적·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하여 종전에 장성급장교로 보하던 군사보좌관을, 앞으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면서 그 명칭을 국방보좌관으로 변경하되, 이에 필요한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며,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분야의 총괄·조정 등 첨단전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밑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첨단전력기획관을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 한시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국방분야 인공지능 정책 관련 수립·조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전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력정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유무인복합체계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 한시정원 3명(4급 1명, 5급 2명)을 상시정원으로, 군무원 채용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7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각각 전환하고, 국방부 자원관리실을 국방인공지능기획국, 전력정책국, 국방정보화국, 군수관리국 및 군사시설국으로 개편하면서 그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국방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군공항이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26년 1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1월 30일까지로, 국방부 차관 밑에 설치한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8년 2월 28일까지로,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밑에 설치한 방위산업수출기획과의 존속기한을 2026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4월 30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군부대·기관의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국군의무사관학교의 설립·운영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2028년 12월 31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국방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2. 17. ~ 12.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운영지원과·국방정책실·인사복지실·자원관리실 및 전력정책국”을 “차관보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군사보좌관”을 “국방보좌관”으로, “법무관리관, 감사관 및 국방혁신기획관”을 “법무관리관 및 감사관”으로 한다.

- ② 국방부에 운영지원과·국방정책실·인사복지실·국방인공지능기획국·전력정책국·국방정보화국·군수관리국 및 군사시설국을 둔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차관보) ①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한다.

1. 국방인공지능기획·전력정책·국방정보화 및 군수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2. 그 밖에 장관 또는 차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5조의 제목 “(군사보좌관)”을 “(국방보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사보좌관”을

“국방보좌관”으로 한다.

① 국방보좌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제2항제8호 중 “지도·감독”을 “운영 지원”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3명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3명 중 1명은 장성급(將星級)장교로 각각 보한다.

제7조의2제3항제32호부터 제3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8호부터 제4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2. 국방개혁 정책의 총괄·조정

33.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수립·변경

34. 5년 단위의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시행

35. 국방개혁 과제의 추진실적 분석·평가

36. 국방개혁위원회의 운영

37.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운영 지원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12조제3항제39호 및 제4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1.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기관 정부연습 업무의 총괄

제13조제3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징발 및 보상 정책의 수립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4조의2를 제14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4조의2) 제3항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부터 제14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국방인공지능기획국) ① 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분야 인공지능 정책의 수립 및 조정·통제
2. 국방데이터 정책의 수립 및 조정·통제
3.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4.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정책의 수립 및 조정·통제
5. 국방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정책의 수립 및 조정·통제
6.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분야 정책 수립
7.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4조의4(국방정보화국) ① 국방정보화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정보화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2. 국방정보화 사업의 소요, 중기계획 및 예산에 대한 검토·조정

3. 국방정보화 사업의 조정·통제 및 평가
4. 국방정보자원의 관리·공유 및 활용
5. 국방정보기술 아키텍처의 구축·관리 및 활용
6. 국방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에 관한 사항
7. 국방전산정보원 업무의 운영 지원
8. 국방 사이버안보에 관한 분석·대책의 수립 및 발전
9. 국방 전자기스펙트럼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발전

제14조의5(군수관리국) ① 군수관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수정책, 군수품조달정책, 군수지원계획, 전투긴요물자 및 장비 비축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발전
2. 장비·물자·탄약 등 군수품의 보급·관리·운영·처분 및 단속에 관한 사항
3. 군수품의 총수명주기 관리 정책 및 제도발전
4. 민간생산·유통물품의 군수품 활용 확대 및 군 물류체계 개선 업무
5. 부품 단종(斷種) 관리 및 부품 국산화 등 부품관리 정책의 수립 및 제도발전
6. 군수 분야의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의 검토·조정 및 종합
7. 군수 분야 저탄소·녹색성장 정책 수립 및 조정·통제
8. 장비 및 물자류 등 무기체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 군수품의 소

요 결정 및 소관사업의 관리

9. 동산의 징발 및 보상 수행에 관한 사항
 10. 군수품의 규격화, 형상(「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형상을 말한다) 관리 및 종합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방 수송운영방침의 수립 및 제도발전
 12. 탄약의 저장·안전관리, 신뢰성 평가 및 비군사화 관련 사항
 13. 대외 군수협력 및 주둔군의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군 재난관리정책·계획의 수립 및 재난관리대책의 시행·조정
 15. 군 안전관리 정책·계획의 수립·총괄 및 유관부서와의 협조
 16. 군의 대민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17. 군수 분야의 정보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사업 검토·조정
- 제14조의6(군사시설국) ① 군사시설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사시설(전투력 지원을 위한 필수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정책·계획의 수립 및 제도의 연구·발전
 2. 군 관련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군사시설의 건설·이전·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4. 국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국방부 소관 국유재

산(「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은 제외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주한미군에 대한 재산의 제공·관리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른 한·미시설 및 구역분과위원회의 운영
6. 부동산·권리의 징발 및 보상 수행에 관한 사항
7.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8. 군 건설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9. 국방시설의 표준화와 병영기본계획 방침의 수립·조정
10.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11. 군 공사의 시공평가·감리·품질관리제도의 연구·개선
12.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13. 방위비 분담 시설사업의 집행승인 및 조정·통제
14. 국방시설본부 업무의 지도·감독
15. 군 구조 개편 대상 군사시설의 재배치 계획 수립 및 집행·통제
16.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 보호에 관한 사항
17. 군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
18. 군 환경오염방지 사업 및 군 주둔지역·작전지역 안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19. 군 주거지원 및 주택 구입 정책에 관한 사항
20.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의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 정책에 관한 사항

제15조제2항 중 “참모총장·국방부기획조정실장·국방부국방정책실장·국방부인사복지실장·국방부자원관리실장”을 “참모총장·국방부 차관보·국방부 기획조정실장·국방부 국방정책실장·국방부 인사복지실장”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후단 중 “47명”을 “49명”으로 한다.

제6장의2(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평가대상 조직

제27조의2(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국방부 자원관리실”을 “국방부”로, “2026년 1월 30일”을 “2028년 1월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공항 이전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제도의 연구
2. 군 공항 이전건의서의 접수·평가 및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3.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및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운영·관리

4.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29조의2제1항 중 “2026년 2월 28일”을 “2028년 2월 28일”로 한다.

제29조의3제1항 중 “2026년 4월 30일”을 “2028년 4월 30일”로 한다.

제29조의5를 삭제한다.

제29조의6의 제목 “(국방연구개발총괄과)”를 “(국방연구개발기획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력정책국”을 “국방인공지능기획국”으로, “국방연구개발총괄과”를 “국방연구개발기획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방연구개발총괄과”를 “국방연구개발기획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방연구개발총괄과장”을 “국방연구개발기획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방연구개발총괄과”를 “국방연구개발기획과”로 한다.

제29조의7을 삭제한다.

제3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26년 3월 31일”을 “2028년 3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운영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별표 1 중 총계 “671”을 “685”로 하고, 일반직 계 “663”을 “677”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16”을 “18”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641”을 “653”으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정보화기획관”을 “국방정보화국장”으로 한다.

② 징발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자원관리실장이”를 “차관보가”로 한다.

③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자원관리실장”을 “차관보”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군사시설기획관”을 “군사시설국장”으로 한다.

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자원관리실장”을 “군사시설국장”으로 한다.

[별표 2의2]

국방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7조의2제1항 관련)

조직	정원
국방인공지능기획국 1개 과	7명

[별표 3]

국방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

(제29조제4항, 제29조의2제4항, 제29조의3제4항, 제29조의4제4항 및 제29조의6 제4항 관련)

1. 군공항이전사업단(존속기한: 2028년 1월 30일)

총계	15
일반직 계	15
고위공무원단	1
3급 또는 4급 이하	14

2. 군인권개선추진단(존속기한: 2028년 2월 28일)

총계	2
일반직 계	2
고위공무원단	1
4급 이하	1

3. 방위산업수출기획과(존속기한: 2028년 4월 30일)

총계	7
일반직 계	7
3급 또는 4급 이하	7

4. 중동아프리카정책과(존속기한: 2027년 7월 25일)

총계	1
일반직 계	1
5급 이하	1

5. 국방연구개발기획과(존속기한: 2027년 7월 25일)

총계	1
일반직 계	1
4급 이하	1

[별표 4]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한시정원표(제30조 관련)

1. 제30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5급 이하	2

2. 제30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3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5급 이하	2

3. 제30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4급 또는 5급 이하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하부조직) ① 국방부에 <u>운영지원과 · 국방정책실 · 인사복지실 · 자원관리실 및 전력정책국</u> 을 둔다. <u><신 설></u>	제4조(하부조직) ① ----- <u>차관보 1명</u> ----- ----- -----. ② <u>국방부에 운영지원과 · 국방정책실 · 인사복지실 · 국방인공지능기획국 · 전력정책국 · 국방정보화국 · 군수관리국 및 군사시설국</u> 을 둔다. ③ ----- <u>국방보좌관</u> ----- ----- ----- ----- <u>법무관리관 및 감사관</u> ----- -----.
② 장관 밑에 <u>군사보좌관 1명,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u> 을 두고, 차관 밑에 <u>기획조정실장, 법무관리관, 감사관 및 국방혁신기획관</u> 각 1명을 둔다. <u><신 설></u>	제4조의2(차관보) ① 차관보는 <u>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u> ② 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한다. 1. <u>국방인공지능기획 · 전력정책 · 국방정보화 및 군수관리 업무의 총괄 · 조정</u> 2. 그 밖에 장관 또는 차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

제5조(군사보좌관) ① <u>군사보좌관은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u> ② <u>군사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u> 1. ~ 10. (생략) 제6조(대변인) ① (생략) ② <u>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u> 1. ~ 7. (생략) 8. <u>국방홍보원 업무의 지도·감독</u> 제7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생략) ② <u>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u> ③ <u>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u> 1. ~ 31. (생략) 32. <u>국방정보화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u> 33. <u>국방정보화 사업의 소요·</u>	<u>리</u> 제5조(국방보좌관) ① <u>국방보좌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u> ② <u>국방보좌관-----</u> -----. 1. ~ 10. (현행과 같음) 제6조(대변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7. (현행과 같음) 8. ----- <u>운영 지원</u> 제7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현행과 같음) ② <u>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3명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3명 중 1명은 장성급(將星級)장교로 각각 보한다.</u> ③ ----- -----. 1. ~ 31. (현행과 같음) 32. <u>국방개혁 정책의 총괄·조정</u> 33. <u>국방개혁기본계획의 수립·</u>
--	---

<u>중기계획 및 예산에 대한 검토·조정</u>	<u>변경</u>
<u>34. 국방정보화 사업의 조정·통제 및 평가</u>	<u>34. 5년 단위의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시행</u>
<u>35. 국방정보자원의 관리·공유 및 활용</u>	<u>35. 국방개혁 과제의 추진실적 분석·평가</u>
<u>36. <삭 제></u>	<u>36. 국방개혁위원회의 운영</u>
<u>37. 국방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구축·관리 및 활용</u>	<u>37.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운영 지원</u>
<u>38. 국방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39. 국방전산정보원 업무의 지도·감독</u>	<u><삭 제></u>
<u>40.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41.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제9조의2(국방혁신기획관) ① 국방혁신기획관은 장성급장교로 보한다.</u>	<u><삭 제></u>
<u>② 국방혁신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u>	
<u>1. 국방혁신 정책의 총괄·조정</u>	
<u>2. 국방혁신 기본계획 수립·변경</u>	
<u>3. 국방혁신 5년 단위 추진계획</u>	

<u>수립·시행</u> 4. <u>국방혁신 관련 각 시행기관</u> · <u>부서의 연도별 시행계획 중</u> <u>합</u> 5. <u>국방혁신 과제의 추진실적</u> <u>분석·평가</u> 6. <u>국방개혁위원회의 운영</u> 7. <u>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운영</u> <u>지원</u> 제12조(국방정책실) ①·② (생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8. (생략) 39. <u>국방 사이버안보에 관한 분석·대책의 수립 및 발전</u> 40. <u>국방전자기스펙트럼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발전</u> <u><신 설></u> 제13조(인사복지실) ①·② (생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9. (생략) 20. <u>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기관</u>	제12조(국방정책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8.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41. <u>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u> <u>· 기관 정부연습 업무의 총괄</u> 제13조(인사복지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19. (현행과 같음) 20. <u>징발 및 보상 정책의 수립</u>
---	--

정부연습 업무의 총괄

21. ~ 33. (생략)

제14조(자원관리실) ① 자원관리

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수정책, 군수품조달정책, 군수지원계획, 전투긴요물자 및 장비 비축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발전

2. 장비·물자·탄약 등 군수품의 보급·관리·운영·처분 및 단속에 관한 사항

2의2. 군수품의 총수명주기 관리 정책 및 제도발전

2의3. 민간생산유통물품의 군수품 활용 확대 및 군 물류체계 개선업무

2의4. 부품 단종 관리 및 부품 국산화 정책·제도발전

3. 군수 분야의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의 검토·조정·종합·

21. ~ 33. (현행과 같음)

<삭제>

요구

4. 국방 분야 저탄소 · 녹색성장 정책 수립 및 조정 · 통제
5. 장비 및 물자류 등 무기체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 군수품의 소요 결정 및 소관사업의 관리
6. 군수품의 규격화 · 형상관리 및 종합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
7. 국방 수송운영방침의 수립 및 제도발전
8. 탄약의 저장 · 안전관리, 신뢰성 평가 및 비군사화 관련 사항
9. 대외 군수협력 및 주둔군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군 재난관리정책 · 계획의 수립 및 재난관리대책의 시행 · 조정
11. 군의 대민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조정
12. 군수정보화에 관한 사항
13. 국군수송사령부 업무의 지도 · 감독
- 13의2. 군 안전관리 정책 · 계획

의 수립·총괄 및 유관부서와
의 협조

14. 군사시설(전투력 지원을 위
한 필수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정책·계획
의 수립 및 제도의 연구·발
전

15. 군 관련 국토종합계획에 관
한 사항

16. 군사시설의 건설·이전·유
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
항

17. 국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군수품관리
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은
제외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
항

18. 주한미군에 대한 재산의 제
공·관리와 주한 미합중국 군
대의 지위협정에 따른 한·미
시설 및 구역분과위원회의 운
영

19. 징발 및 보상정책의 수립

20.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
계획 승인

- 21. 군 건설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 22. 국방시설의 표준화와 병영
기본계획 방침의 수립·조정
- 23.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 24. 군 공사의 시공평가·감리
· 품질관리제도의 연구·개선
- 25.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
계의 운영 및 관리
- 26. 방위비 분담 시설사업의 집
행승인 및 조정·통제
- 27. 국방시설본부 업무의 지도
· 감독
- 28. 군 구조 개편 대상 군사시설
의 재배치 계획 수립 및 집행
· 통제
- 29.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 보호
에 관한 사항
- 30. 군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
- 31. 군 환경오염방지 사업 및 군
주둔지역·작전지역 안의 생
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 31의2. 군 주거지원 및 주택 구
입 정책에 관한 사항
- 31의3.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의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 정책에 관한 사항

32. 삭제

33. 삭제

34. 삭제

35. 삭제

35의2. 삭제

35의3. 삭제

35의4. 삭제

35의5. 삭제

36. 삭제

37. 삭제

38. 삭제

39. 삭제

40. 군 공항 이전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제도의 연구

41. 군 공항 이전건의서의 접수
· 평가 및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42.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및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
위원회의 운영 · 관리

43.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 전주
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신 설>

제14조의2(국방인공지능기획국)

① 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분야 인공지능 정책의 수립 및 조정·통제

2. 국방데이터 정책의 수립 및 조정·통제

3.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4.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정책의 수립 및 조정·통제

5. 국방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정책의 수립 및 조정·통제

6.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분야 정책 수립

7.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4조의2(전력정책국)

① · ②

제14조의3(전력정책국)

① · ②

(생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략)

12. 국방과학기술혁신 중·장기 정책 수립·시행

13.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분야 총괄·조정

<신설>

(현행과 같음)

③ -----
--.

1. ~ 11.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제14조의4(국방정보화국) ① 국방

정보화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정보화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2. 국방정보화 사업의 소요, 중기계획 및 예산에 대한 검토·조정

3. 국방정보화 사업의 조정·통제 및 평가

4. 국방정보자원의 관리·공유 및 활용

5. 국방정보기술 아키텍처의 구축·관리 및 활용

6. 국방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신 설>

상호운용성에 관한 사항

7. 국방전산정보원 업무의 운영
지원

8. 국방 사이버안보에 관한 분
석·대책의 수립 및 발전

9. 국방 전자기스펙트럼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발전

제14조의5(군수관리국) ① 군수관
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군수정책, 군수품조달정책,
군수지원계획, 전투긴요물자
및 장비 비축계획의 수립·조
정 및 제도발전

2. 장비·물자·탄약 등 군수품
의 보급·관리·운영·처분
및 단속에 관한 사항

3. 군수품의 총수명주기 관리
정책 및 제도발전

4. 민간생산·유통물품의 군수
품 활용 확대 및 군 물류체계
개선 업무

5. 부품 단종(斷種) 관리 및 부

품 국산화 등 부품관리 정책
의 수립 및 제도발전

6. 군수 분야의 중기계획 및 예
산편성의 검토·조정 및 종합

7. 군수 분야 저탄소·녹색성장
정책 수립 및 조정·통제

8. 장비 및 물자류 등 무기체계
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 군
수품의 소요 결정 및 소관사
업의 관리

9. 동산의 징발 및 보상 수행에
관한 사항

10. 군수품의 규격화, 형상(「방
위사업법 시행령」 제32조제1
항에 따른 형상을 말한다) 관
리 및 종합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방 수송운영방침의 수립
및 제도발전

12. 탄약의 저장·안전관리, 신
뢰성 평가 및 비군사화 관련
사항

13. 대외 군수협력 및 주둔군의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군 재난관리정책·계획의
수립 및 재난관리대책의 시행

<신 설>

· 조정

15. 군 안전관리 정책·계획의
수립·총괄 및 유관부서와의
협조

16. 군의 대민지원에 관한 계획
의 수립·조정

17. 군수 분야의 정보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사업 검토·
조정

제14조의6(군사시설국) ① 군사시
설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군사시설(전투력 지원을 위
한 필수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정책·계획
의 수립 및 제도의 연구·발
전

2. 군 관련 국토종합계획에 관
한 사항

3. 군사시설의 건설·이전·유
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
항(「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위
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4. 국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
한 계획의 수립 및 국방부 소
관 국유재산(「군수품관리
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은
제외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
항

5. 주한미군에 대한 재산의 제
공·관리와 주한미군지위협정
에 따른 한·미시설 및 구역
분과위원회의 운영

6. 부동산·권리의 징발 및 보
상 수행에 관한 사항

7.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
계획 승인

8. 군 건설기술 개발에 관한 사
항

9. 국방시설의 표준화와 병영기
본계획 방침의 수립·조정

10.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11. 군 공사의 시공평가·감리
·품질관리제도의 연구·개선

12.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
계의 운영 및 관리

	<u>13. 방위비 분담 시설사업의 집행승인 및 조정 · 통제</u> <u>14. 국방시설본부 업무의 지도 · 감독</u> <u>15. 군 구조 개편 대상 군사시설의 재배치 계획 수립 및 집행 · 통제</u> <u>16.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 보호에 관한 사항</u> <u>17. 군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u> <u>18. 군 환경오염방지 사업 및 군 주둔지역 · 작전지역 안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u> <u>19. 군 주거지원 및 주택 구입 정책에 관한 사항</u> <u>20.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의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 정책에 관한 사항</u>
제15조(군무회의) ① (생략)	제15조(군무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군무회의는 국방부장관 · 국방부차관 · 합동참모의장 · 각군 <u>참모총장 · 국방부기획조정실장 · 국방부국방정책실장 · 국방부인사복지실장 · 국방부자원관리실장</u> 및 국방부장관이 지정	② ----- ----- -- <u>참모총장 · 국방부 차관보 ·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 국방부 인사복지실장</u> -----

하는 자로 구성하되, 국방부장관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생략)

제25조(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④ (생략)

<신설>

<신설>

-----.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49명-----

-----.

③·④ (현행과 같음)

제6장의2 평가대상 조직

제27조의2(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29조(군공항이전사업단) ① 국
방부 자원관리실에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
026년 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군공항이전사업
단을 둔다.

② (생략)

③ 단장은 제14조제3항제40호
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
한다.

④ ~ ⑥ (생략)

국방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
로 정한다.

제29조(군공항이전사업단) ① 국
방부-----

----- 20
28년 1월 30일-----

② (현행과 같음)

③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공항 이전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제도의 연구

2. 군 공항 이전건의서의 접수
· 평가 및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3.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
회 및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
위원회의 운영·관리

4.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
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① 차관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둔다.

② ~ ⑦ (생략)

제29조의3(방위산업수출기획과)

① 국방부 전력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6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방위산업수출기획과를 둔다.

② ~ ⑥ (생략)

제29조의5(첨단전력기획관) ① 국

방부 전력정책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7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첨단전력기획관 1명을 둔다.

② 첨단전력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9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① -----

----- 2028년 2월 28일-----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9조의3(방위산업수출기획과)

① -----

--- 2028년 4월 30일-----

-----.

② ~ ⑥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첨단전력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력정책국장을 보좌한다.

1. 국방과학기술혁신 중·장기 정책 수립·시행

2.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정책 수립 및 조정·통제

3. 국방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정책 수립 및 조정·통제

4.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분야 총괄·조정

④ 첨단전력기획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제29조의6(국방연구개발총괄과)

① 국방부 전력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7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방연구개발총괄과를 둔다.

② 국방연구개발총괄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국방연구개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제29조의6(국방연구개발기획과)

① ---- 국방인공지능기획국-----

----- 국방연구개발기획과-----.

② 국방연구개발기획과-----

----.

③ 국방연구개발기획과장-----
-----.

1. ~ 7. (현행과 같음)

④ 국방연구개발총괄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
다.

⑤ (생 략)

제29조의7(유무인복합체계과) ①

국방부 전력정책국에 「행정기
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7년 7월 25일까지 존속
하는 한시조직으로 유무인복합
체계과를 둔다.

② 유무인복합체계과에 과장 1
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
한다.

③ 유무인복합체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혁신기술 및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분야 총괄·조정

2.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
합전투체계 성과점검·관리

3. 국방 드론·로봇 분야 발전
전략 수립, 성과 관리

4. 계열화·모듈화 기반 무인체
계 구축, 제도 발전

5. 첨단기술 분야 민·군 협력

④ 국방연구개발기획과-----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사업 기획·조정

6. 미래 첨단 핵심전력 선정 및
확보방안 수립

④ 유무인복합체계과에 두는 공
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
방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한시정원) ① (생 략)

② 군무원 채용 관련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
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
조제1항에 따라 2026년 3월 31
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
을 국방부에 둔다.

③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
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3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
원을 국방부에 둔다.

<신 설>

제30조(한시정원) ① (현행과 같
음)

<삭 제>

③ -----

----- 2028년 3월
31일-----
-----.

④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운
영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
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
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u>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u>
--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1]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25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71</u>	<u>685</u>	+14
·	·	·	
·	·	·	
일반직 계	<u>663</u>	<u>677</u>	+14
고위공무원단	<u>16</u>	<u>18</u>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641</u>	<u>653</u>	+12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83